

않는다. 물론 스크로브가 그런 기술들을 포기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의 제안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위의 기준들에 비춰 되도록이면 지역 중심적이고 민주적인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민주적 합의에 이를 것인가? 합의회의

핀버그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 왜 기술의 민주화가 가능한가를 밝혔다면, 위너는 기술의 정치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이 기술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릴과 토폴러는 기술 사회에서도 민주주의의 원칙이 유용하고, 그 원칙이 기술 사회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복잡한 이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왜 기술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즉, 현대 기술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기업이나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개발되기 힘들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민은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혹은 일정한 위험(risk)에 노출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의지와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술의 민주화를 실현할 것인가? 수많은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마당에, 새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매년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술 선택의 문제를

기존의 정당 중심의 선거에 연결시킬 수도 없다. 정당은 이념과 가치에 따라 모이지만, 기술의 선택에는 전혀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이다.

기술의 발전을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으로는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가 대표적이다. 합의회의는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패널이 되어 토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토론을 위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 이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다. 시민 패널은 해당 사안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며 서로 토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시민 패널은 합의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한다.

합의회의 과정에서 나온 전문가의 설명이나 질의 응답 같은 것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시민들도 패널들과 함께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합의회의의 조직과 운영이 충분히 중립적이라면, 합의 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덴마크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합의회의를 개최했고, 한국에서도 시민과학센터와 유네스코 등의 주관으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

이런 합의회의의 성패는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합의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시

민 패널의 선정이나 전문가 초청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당화의 수단으로 합의회의가 오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기관들이 합의회의에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 유·불리를 떠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입장을 재검토할 준비를 해야 한다.

누가 민(民)인가? 기술 민주화 이론의 문제점들

기술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황당하고, 좀 더 들여보면 말이 되는 것도 같지만, 막상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위에서 소개한 기술의 민주화 이론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 이론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실현 가능성의 문제다. 엘릴과 토플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인간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엘릴은 이를 '자율적 기술'이라 불렀고, 토플러는 '물결'에 비유한다. 기술의 민주화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의 논리에 의해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합의회의만 보더라도 서로 상충하는 이해를 가진 집단들과 전문가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시민 패널로 선정된 사람들이 과연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합의회의의 결과를 정부나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합의회의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한 예도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합의회의의 성공은 그 결정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합의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 핵폐기물, 생명공학 등의 주제를 가지고 대규모 합의회의가 열렸지만, 그 결정 사항들이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바꾼 예는 거의 없다. 오히려 소규모의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합의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즉각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규모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합의회의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는가의 문제보다는 기술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현대 기술은 국경을 모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기술들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기술은 전 지구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장경제가 전 지구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계의 시장경제 역시 기술을 매개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이 전 지구화를 이끄는 시대에 개별 국가의 중요성은 점점 약

화된다. 이 부분은 토플러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일정한 경계와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선거를 할 때 누구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엄격하게 따지는 이유는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민주적인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국가나 정치적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권리도 책임도 부여되지 않는다. 국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말도 이와 연관이 있다. 물론 UN 같은 기구에서는 모든 나라가 한 표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인구가 수십 배씩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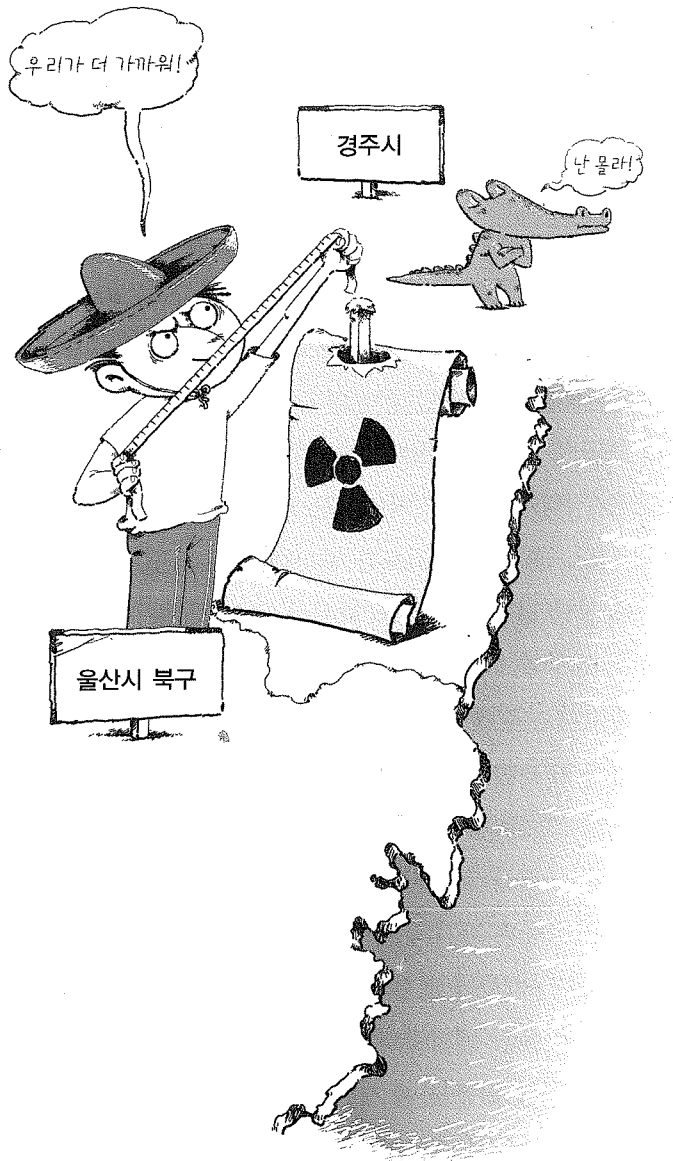
그래서 경계를 모르는 기술에 경계가 필수적인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특정 연구(예를 들어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금하고 B라는 국가에서는 허용했다고 하자. 나중에 B에서 개발된 기술은 불법적이건 합법적이건 A로도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다. A의 국민들은 그 기술의 혜택을 보려고 B를 방문하게 될 수도 있다. A는 개발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국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술까지도 경쟁과 선점의 논리에 의해 계속 개발하게 된다.

또 A라는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적 결정이 B라는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11월에 한국 최초의 중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결정된 경주의 예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방사능 폐

기물을 어디에 묻을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특정 지역을 지목해 폐기물을 처리하려 했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결사적으로 저항해 무산시키곤 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폐기물을 유치하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특별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자 갑자기 방사능 폐기물 유치가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2005년에 도입된 방식은 방사능 폐기물 유치를 신청한 지역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해당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지역들 중 찬성률이 높은 지역이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투표자의 89.5퍼센트가 찬성한 경주가 투표자의 80.1퍼센트가 찬성한 전북 군산을 물리치고 방사능 폐기물 부지로 확정되었다. 정부와 대다수의 언론은 국책 사업을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겼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경주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울산시가 이의를 제기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곳이 경주시와 울산시의 경계와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주시의 행정구역 내에서도 폐기물 처리장과 자기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울산 시민보다 먼 사람이 많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시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폐기물의 위험 부담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울산 시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멀리 살고 있는 경주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민주적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설사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한다 해도, 얼마만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거리별로 투표권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주방폐장 주민투표무효 헌법소원

경주시가 준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울산 주민들이 <경주 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경주시는 지난 2일 전국 네곳의 지자체에서 실시된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 방폐장 부지로 선정됐으며, 경주시와 접경한 울산 시는 경주가 방폐장 유치 활동을 시작한 뒤로 경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 지역에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울산시 북구로,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신청한 양북면과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행정구역만으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 것은 실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울산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불평등한 투표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